

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출자 : 송도호 의원 외 21명

나. 의안번호 : 제2523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3. 31.

라. 회부일자 : 2025. 4. 2.

2. 제안사유
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,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이동 편의 증진을 강화하여,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, 교통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교통약자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교육 관련 법적 근거를 법 및 시행규칙으로 확대 명시 (안 제19조제1항)

-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무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

나. 성폭력 예방교육 신설 (안 제19조제2항)

-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에 '성폭력 예방교육'을 추가하여,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강화

다.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대상 포함 (안제19조제3항 신설)

- 택시운수종사자도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, 택시 이용 시 교통약자에게도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5. 4. 5. ~ 2025. 4. 9.
-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⁾

- 제출의견 : 원안가결
 - 우리시는 택시운수종사자 대상으로 법정교육 진행시 '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'을 '23년부터 선제적으로 교육중인 상황이며,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안과 같이 당해조례 개정이 필요함

1) 택시정책과-12899호(2025. 4. 9.)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개정사항²⁾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약자 이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■ 상위법령 개정사항

- '25년 1월 상위법령인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(이하 '법') 제13조³⁾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기존 교통

2)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[시행 2025. 1. 17.] [법률 제20038호, 2024. 1. 16., 일부개정]

○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-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, 택시운수종사자 및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-이하 생략-
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[시행 2025. 1. 17.] [국토교통부령 제1442호, 2025. 1. 17., 일부개정]

○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-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외에 성폭력 예방교육을, 택시운수종사자 등은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-이하 생략-

3)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3조(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) [시행 2025. 1. 17.] [법률 제20038호, 2024. 1. 16., 일부개정] ① 교통사업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

약자서비스 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⁴⁾ 경우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변경되었음

또한, 해당 교육들에 대한 교육시간, 내용 등 구체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3조⁵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음

○ 동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기존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외에 성폭력 예방교

한다. 1.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.성폭력 예방교육 ③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택시운수종사자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,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4)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4. “택시운수종사자”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5)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제3조(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) [시행 2025. 1. 17.] [국토교통부령 제1442호, 2025. 1. 17., 일부개정]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·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·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·허가·인가·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·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,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: 1회, 4시간 이상 2. 교육 내용: 다음 각 목의 사항 가.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.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횟수,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: 연 1회, 2시간 이상 2. 교육 내용: 다음 각 목의 사항 가.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.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.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.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,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: 연 1회, 1시간 이상 2. 교육 내용: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- 이하 생략-

육도 받도록 추가하고, 택시운수종사자도 시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

- 따라서, 동 조례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서울시는 향후 택시운수종사자 등의 교육⁶⁾에 있어 개정된 교육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임

6) 택시 운수종사자 교육개요

- 교육대상 및 내용 : 「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」 제58조 제2항 준용
- 교육기관 : 교통연수원(법인·고급형택시), 교통문화교육원(개인택시)
- 교육방식 : (원칙) 대면교육, (병행) 줌교육(법인), 출장교육(개인)